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76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7.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22895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8. 5.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6. 1. 접수 제49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6. 1. 접수 제49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6번째 줄 “망 C에”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5쪽 2번째 줄부터 제5쪽 4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망인이 2018. 7. 7. 사망하였고, 그 형제인 원고와 피고, D, E 4인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6. 1. 접수 제49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이전등기가 없었다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의정부시장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최연장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 납부통지를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위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통지를 받지 못한 망인은 적어도 2018. 7.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알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의정부시장이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최연장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망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대 126.6㎡

중

갑구 9번 1000분의 100

지분 전부

